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양육비 채권 집행을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의 압류 허용 근거 마련 〉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714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양육비 채권에 대한 압류 근거 마련	3

I. 개요

1.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71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24.

(3) 회 부 일 : 2025. 7.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이 있어,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양육비 채권에 대한 압류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 등이 금지되는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 ----- ----- ----- -----. <u>다만, 사회보장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로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압류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제한·정지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제한·정지되는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¹⁾

- 사회보장 관계 법령 및 사회보장수급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통해 기본적인 범위를 참고할 수 있음.

1)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사회보장 관계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

보장구분	관계법률	사회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부모급여, 양육수당,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청소년 특별지원
노인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시설 이용·입소, 자산형성, 타법 의료급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

자료: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6호)

- 한편,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²⁾,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와의 합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 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음.⁴⁾

□ 그런데,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라도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압류가 불가능한 수급권의 종류 >

급여명	근거법률
기초생활 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 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18조(수급권의 보호) ①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급여명	근거법률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⑤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⑥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아동수당	「아동수당법」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①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제19조(압류금지 등) ①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급여	「장애인복지법」 제82조(압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②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양도·담보 및 압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양도·담보 및 압류 금지) 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양육비 채권을 이유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압류가 가능해질 경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부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양육비는 법원이 부모의 소득 등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육비가 수급권자의 생계나 복리에 위해가 될 정도로 과다하게 정해지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양육비 채권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수급권 압류 금지조항의 위헌확인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년 기각 결정⁵⁾을 내렸었는데,

다수의견(5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조항이 양육비 채권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으며, 소수의견(4인)도 압류금지조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2000년 결정⁶⁾에서도 제시 되었으므로 압류금지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공무원연금의 압류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 2018.7.26. 2016헌마260) / 종국결과: 기각(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미달)

다수의견(5인)

압류금지조항의 입법목적에는 채권자로부터 수급권자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고 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수급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수급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수

5) “압류금지조항 중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이 다수의견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압류제한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헌법재판소, 2018.7.26. 2016헌마260)

6)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사법상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한 근본취지는 채무자인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확일적으로 압류를 전액 금지하면 채권자의 희생 아래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결과는 헌법정신에 합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헌법재판소, 2000.3.30. 98헌마401)

급권자와 양육대상인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압류금지조항은 수급권자의 양육대상인 자녀의 생활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도외시킨 채, ‘수급권자 본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양육비를 법원이 정할 경우 부모의 소득 등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다(민법 제837조). 그러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에 대하여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채권에 비하여 수급권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적다.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법익은 압류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상당 부분 보호가 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속성상 그에 기한 집행을 허용해도 그 법익의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 반면, 압류금지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그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재산권, 즉 양육비채권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나 규범적인 관점에서 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 그렇다면, 압류금지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수급권 전부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을 이유로 헌법상 정당화 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와 같이 압류금지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자녀양육권 및 그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으므로, 압류금지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압류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소수의견(4인)

압류금지조항은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양육비채권은 원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수급권자가 자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용 부담도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오히려 압류금지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압류금지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이에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공적 연금이나 급여를 대상으로 한 압류를 제한하면서도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 압류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입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소송법에서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지급의무 이행명령을 하고 이 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치에 처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4조, 제67조, 제68조),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제63조의2). 또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 지급을 위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제63조의3),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도 도입되어 있다(제48조의 2, 제48조의3).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압류금지조항에 따른 압류 제한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압류금지조항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다.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압류 제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를 두는 등 연금수급권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선례에서 지적한 것처럼 입법자는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함을 이 사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은 공무원 연금과 그 목적 및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기여금 납부 등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반면,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⁷⁾,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음.

즉, 공무원연금의 수급권은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수급권자에게 양육비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보장급여 중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⁸⁾된다는 점에서, 가구원 중 한 명의 양육비 채무로 인하여 해당 가구의 급여 전부를 압류한다면 다른 가구원의 최저생활 보장을 저해할 수 있음.

7)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핵심적인 것”(헌재 2003.12.18. 2002헌바1 전원재판부)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최소한의 수준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와 달리, 공무원연금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⁹⁾이 있다는 점에서 압류로 인한 수급권자의 생계 위협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195조¹⁰⁾는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등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결국,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압류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더라도,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회보장수급권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압류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사회보장수급권 전반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압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나, 현행법 제12조¹¹⁾에 따르면,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9) 2024년 공무원연금월액 평균은 290만원. (인사혁신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1인가구 76만원 / 4인가구 195만원 / 7인가구 287만원.

10)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1)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 중에는 의료급여처럼 수급권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급여도 있지만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급여처럼 수급권자의 생계유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급여도 있다는 점에서, 급여의 압류 여부는 개별 급여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회보장급여의 압류는 수급권자의 생존 및 최소한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최소화하고 자제하는 것이 타당함.

권리 침해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각 사회보장급여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에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법에 규정할 경우 규율의 대상과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개별법과 지속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압류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 관련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부 사회보장급여의 압류제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 또는 위헌 의견을 혼합하여 제시한 바는 특정 급여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된 것으로 이를 사회보장급여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자가 []임차 ⁹⁾ []기타 ¹⁰⁾)	
	[]교육급여 (바우처 제공)	※ 유의사항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보장결정된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을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대상자 이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 · 청소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신청 []미신청] [인터넷통신사 []KT []SK브로드밴드 []LG U+ []SK 텔레콤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연장신청)	
노인	[]기초연금([]배우자 동시신청)	
장애인	[]장애연금([]배우자 동시신청 []차상위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시설이용·입소 []자산형성 []타법 의료급여 ¹¹⁾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	

관 계 별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